

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맞춤형 해설서 배포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. (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22.1.27, 그 외는 24.1.27 시행)
3. 이와 관련, 축산물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 맞춤형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협회 및 교육기관에서는 자료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중대재해처벌법(축산물 분야) 맞춤형 해설서 1부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, 축산물위생교육원장, (사)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, 대한수의사회,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,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, (사)한국식품안전협회,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, 한국수입육협회, 한국식육운송협회, (사)한국육계협회, 한국육가공협회, 한국난기공협회, 전국식육부산물전문상인회, 대한아이스크림협회, (사)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, 전국족발유통판매협회

주무관 김진만 사무관 김충현 축산물안전정책과전결 2022. 4. 14.  
장 김철희

협조자

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-2533 (2022. 4. 14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250 팩스번호 043-719-3270 / kjmguy@korea.kr / 대국민 공개